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2. 02. 16(목),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경표, 김봉건, 박경립, 박언곤, 이상필,
장석하, 정명섭, 정혜린(진명), 최성은
홍승재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경복궁 사정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공개
2	경복궁 수정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공개
3	경복궁 향원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공개
4	창덕궁 금천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공개
5	창덕궁 부용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공개
6	창덕궁 낙선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공개
7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단독주택 신축(강○○)	공개
8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단독주택 신축(정○○)	공개
9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도로개설	공개
10	고흥 능가사 대웅전 주변 관풍료 개축	공개
11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국사전 건립	공개
12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3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4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금괴관련 굴착(2차)	공개
15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 시탑전 증축(2차)	공개
16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 종무소 신축	공개
17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공개
18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주유소 등 신축	공개
19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 템플스테이 신축	공개
20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전통불교문화예술관 신축 허가사항 변경	공개
21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지하수개발	공개
22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등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23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등 6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24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공 개
【보고사항】		
25	경주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 이수 및 귀부 정비공사 추진보고	공 개
2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사항 변경 허가 - 인제 한계사지 남·북 삼층석탑 주변 건축물 보수공사 허가기간 연장 -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단독주택신축 허가사항 변경 허가 -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신축 허가사항 변경 허가	공 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2-02-001

1. 경복궁 사정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경복궁 사정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복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사정전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1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1.11.17) 검토 : 가결
-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30일간('11.12.08~'12.01.07)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경복궁 사정전(景福宮 思政殿)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경복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번지 경복궁(사적 제117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양 식 : 1층 팔작지붕/정면 5칸, 측면 3칸, 다포집
 - 구 조 : 목조와가
 - 수 량 : 1동

라. 현지조사의견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경복궁 사정전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명예교수,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복궁 사정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복궁 근정전 바로 뒤편에 행랑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사정전 앞에 면한다. 광화문·근정전·사정전 그리고 계속되는 강녕전 등이 궁궐중앙에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었다. 기단에 오르는 정면 3곳의 계단 중 중앙계단은 소맷돌을 설치하여 좌우계단과 차별화했음을 보아 왕의 계단으로 자주 남시는 편전임을 알 수 있다. 동근초석위에 원기둥을 세워서 정면5칸·측면3칸의 단층 겹처마 팔작기와지붕의 7량 구조에 내외 2출목포작의 다포계 양식이다. 4면은 모두 띠살창 4분합문으로 하고, 그 위로 교창을 설치하였다. 바닥은 우물마루에 내부칸막이 시설 없이 하나의 공간이지만 중앙에 어좌를 설치하기 위한 2개 고주를 세워 상부에 벽화가 있는 벽체가 구성되어있다. 천정은 우물천정으로 단청이 화려하다.		
	④연혁·유래 및 특징	임진왜란 때 화재로 방치하고 있다가, 고종4년(1867)에 복원되었다. 어칸을 험칸보다 2배 가까운 비례로 크게 잡았고, 측면에서도 중앙칸을 훨씬 크게 한 것이 특징이다. 단면이 굽은 창방 뿔목은 운궁처리로 하여 평방을 받고 있다. 평주에서도 퇴보의 뿔목을 안초공으로 연결하여 창방과 평방을 감싸게 되어서 화려한 감각을 주게 된다. 쇠서는 양서로 처리하여 힘찬 분위기를 주고, 내부의 포작은 모두 운궁초각하여 화려한 공간분위기로 만들었다. 천정은 우물천정에 단청문양이 화려하며, 겹처마 지붕의 용마루와 내림마루에는 양성을 하고 취두·용두·잡상을 배열했다.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경복궁에서 가장 대표적인 편전으로서의 권위성을 표현하는 사정전이다. 근정전에 바로 접한 편전이고 부재의 짜임이 안정되고 화려함을 같이하는 반면 역사적인 상징성도 크게 부각 되는 건물이다.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⑦문화재 보존 영 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 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궁궐 안에서 왕의 정사 공간 중 대표적 건물로 1867년에 재건되어,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치조의 중심공간에 있던 역사성 있는 건물이다. 중건당시의 건축이 잘 보존된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써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경복궁 사정전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복궁 사정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따로 붙임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따로 붙임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검토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사정전은 왕이 평소에 거처하며 정무를 수행하는 편전으로 정전인 근정전과 함께 치조의 중요한 건물이다. 1867년에 증건한 건물이지만 궁전 편전의 위엄을 지닌 공포짜임을 비롯한 구조양식 전반과 기능 충족을 위한 공간구성 등의 면모를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보물 지정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한국건축사, ○○대학교, 교수
- : 보물
- : 경복궁 사정전

3. : 사정전은 왕이 정사를 보는 치조 영역에 속하는데, 정전인 근정전 뒤에 자리 잡고 있다. 사정문을 들어서면 좌·우측에 각각 천추전과 만춘전이 놓여 있고 둘레에는 행각이 에워싸며 일곽을 이루고 있다. 바로 뒤쪽은 왕이 거처하는 연침으로 이곳에 왕의 침전인 강녕전을 두어 왕이 오가기 좋게 했다.

4. : 사정전은 세종 11년(1492)에 다시 지은 것으로 지금의 건물은 고종 4년(1867)에 근정전·경회루·수정전과 함께 중건한 모습이다. 1915년 조선시정 5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산물산공진회를 개최하면서 사정전은 박애관, 만춘전은 경비실, 천추전은 심사실 등으로 개조되어 사용하였으며, 그 후 한국전쟁 때 파괴된 만춘전을 1988년에 중건했다.

건립 당시에는 報平廳이라 하다 곧 사정전으로 바꾸었다. 思政이란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것인즉,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 나태하고 생각이 부족하면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게 되고 만사가 번잡스럽게 되나니 마땅히 세밀히 살피고 깊이 생각하며 다스려야 성인이 되고 나라가 태평하게 된다.’는 뜻이다. 현판은 글씨에 뛰어나 일가를 이룬 이조판서 조석우(1810~?)가 썼다.

사정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양식 팔작지붕 집이다. 내부는 통칸 마루로 어칸 앞뒤에 내진 고주를 세우고 후 고주 뒤편에 어좌를 두었다. 보탁과 옥좌는 정전에 비해 단아하며, 마루는 동귀틀의 간격을 비교적 좁게 하여 청판을 끼운 조밀한 모습이 궁전 건축의 건실함을 느끼게 한다.

잘 다듬은 화강암 장대석 기단 위에 원형 주좌를 둔 화강암 정평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웠다. 건물의 네 면에는 토벽 없이 모두 4분합 굽넒띠살 문이 달려 있고 그 위쪽에는 교창이 나있다. 문과 창 의 살대 간격을 비교적 넓게 하여 실내의 조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공포는 주간의 크기에 따라 3조 또는 1조씩의 간포를 두고 외 2출목, 내 3출목으로 짜 맞추었다. 외부 살미는 양서형 두 개·수서형 1개이고, 내부는 운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두 아래의 창방까지 안초공을 내외부로 두어 튼튼히 하고, 교두형 첨차의 공안을 깊게 판 모습이 눈에 띈다. 상부가구는 대량 이상 설치한 우물반자로 가려져 있으며, 처마는 겹처마이다. 지붕에는 양성을 바르고 용마루에는 취두, 귀마루에는 용두와 잡상으로 장식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경복궁 사정전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복궁 사정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행에 따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지정가치 있음.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복궁은 전조후침 및 삼문삼조의 기본배치 원리에 따라 치조, 내조, 외조의 구역으로 크게 나뉘어지며 각기 제 기능에 따른 전각이 배치되었다. 치조 구역에는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이 있고, 그 뒤로 사정전, 만춘전, 천추전이 자리잡고 있다. 사정전은 왕이 평상시 거처하며 정사를 보살피던 곳으로 근정전에서 뒤편으로 사정문을 지나면 정면에 위치하며, 양 측면에 만춘전, 천추전이 있다. 그 뒤로는 왕과 왕비의 침전인 강녕전과 교태전이 위치해 있다. 사정전은 만춘전, 천추전과 더불어 편전으로서 정사를 보았던 곳으로 사정전에는 온돌이 없고 만춘전과 천추전에는 온돌이 있어 겨울에는 만춘전과 천추전에서 정사를 보고 경연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전의 정문은 근정전과 통하는 사정문인데 그 좌우에는 서쪽부터 천자문의 글자 순서를 따라 천자고~월자고까지 궁중의 창고가 있는데 창고의 모습은 없어지고 현판만 남아있다.

○ 연혁 · 유래 및 특징

- 연혁

사정전은 경복궁 창건 당시인 태조 4년(1395)에 지어졌으며, 명종 8년(1553)에 불탄 뒤 재건했다. 그 후 선조25년(1592) 4월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복궁의 수많은 전각과 궁문이 모두 대화(大火)를 당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고종 4년(1867)에 근정전, 경회루, 수정전 등과 함께 중건되었다. 일제시대 사정전 일곽은 1915년 시정 5주년 기념사업인 조선물산공진회 당시 사정전은 박애관, 만춘전은 경비실, 천추전은 심사실 등으로 개조되어 사용되었으며, 그 후 6.25동란으로 만춘전이 파괴되었으나, 1988년 다시 중건되었다. ‘사정’은 ‘선정을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정도전이 작명하였으며,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이를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왕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여 정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판은 경복궁을 중건할 때 이조판서로 있던 조석우가 썼다.

- 특징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어칸을 협칸보다 2배 가까운 길이로 넓게 잡았고, 측면에서도 중앙칸을 훨씬 크게 한 것이 특징이다.

기단은 장대석 3벌대 기단이고, 어칸에 소맷돌이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초석은 원형초석이다. 가구는 2고주 7량가의 다포식이며, 단면이 굽은 창방 뿔목은 운궁처리로 하여 평방을 받고 있다. 평주에서도 퇴보의 뿔목을 안초공으로 연결하여 창방과 평방을 감싸게 되어서 화려한 감각을 주게 된다. 공포는 4면 모두 어칸에만 2개의 간포를 배설하고, 협칸, 퇴칸은 1개를 설치하였다. 쇠서는 양서로 처리하였고, 내부의 포작은 모두 화려하게 운궁초각하였다. 천정은 우물천정에 단청문양이 화려하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에는 양성을 하고 취두·용두·잡상을 배열했다.

창호는 4면 모두 띠살창 4분합문으로 하고, 그 위에 교창을 설치하였다. 바닥은 우물마루에

내부칸막이 시설 없이 하나의 공간이지만 중앙에 어좌를 설치하기 위한 2개 고주를 세워 상부에 벽화가 있는 벽체가 구성되어 있다.

○ 지정가치

사정전은 왕이 평상시 거처하며 정사를 보던 편전으로 치조의 중요한 공간이다. 중건 당시의 외관이 잘 남아있어 당시의 높은 기술수준을 잘 보여주며, 궁궐 내 편전 건축 물로써 역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2. 경복궁 수정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경복궁 수정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복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수정전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1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1.11.17) 검토 : 가결
-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30일간('11.12.08~'12.01.07)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경복궁 수정전(景福宮 修政殿)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경복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번지 경복궁(사적 제117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양 식 : 1층 팔작지붕/정면 10칸, 측면 4칸, 익공집
 - 구 조 : 목조와가
 - 수 량 : 1동

라. 현지조사의견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경복궁 수정전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한국건축사		
		명예교수,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복궁 수정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근정전 서북방향의 경회루 남쪽에 위치한 수정전은 정면10칸·측면4칸으로, 정면에 넓은 월대를 갖춘 건물이다. 네 별대의 높은 월대는 정면에 설치된 3곳에 계단을 설치하였고, 중앙의 계단은 소맷돌을 두어 좌우계단과 차별화된 것은 임금의 출입이 자주 있는 편전을 의미한다. 월대를 지나, 계단에 오르면 4각 초석위에 각기둥을 세우고 띠살창 분합문과 빗살창교창을 사방 전면으로 둘러 설치하였다. 이익공양식의 단층 겹처마 팔작기와지붕이다. 높은 기단의 좌우 측면에는 불을 넣는 아궁이를 설치하여 온돌방을 두었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정면10칸·측면4칸의 큰 건축규모와 넓고 높은 월대는 궁궐 내 건축에서, 근정전 다음가는 중요한 기능의 건축임을 알 수 있다. 세종 때 왕의 자문기관인 집현전으로 사용되고, 세조 때는 예문관으로 사용되었고, 1867년에 재건 후엔 고종의 편전으로, 내각청으로 사용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건물이다. 다섯 별대나 되는 높은 기단 위에 세워진 수정전 평면 특성으로 앞면 퇴칸 주간을 넓게 하여 10칸의 도리방향을 모두 대청으로 터져있으며 좌우 및 후면의 퇴칸이 연결되어 내부 회랑 역할을 한다. 사각 초석위에 사각기둥을 사용하였으며, 포작은 길게 뻗은 쇠서의 이익공 위에 소로를 높고 양봉한 보머리 받고 주심도리를 받아준다. 지붕의 용마루 및 내림마루엔 양성을 하고 취두·잡상을 배열했다. 건물의 짜임이 견고하고 창의력 있는 구조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수정전은 규모가 큰 편이고 넓은 월대를 갖춘 궁궐의 최고 권위성 있는 편전이다. 가구형식이 대단한 수준이며, 특수한 편전의 기능을 참고한 평면구성은 형식에 집착하지 않은 창조성이 많다. 더욱이 조선전기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을 창제한 집현전의 역사성과 그 후 조선과 대한제국을 통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건물이다.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 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 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수정전 건물과 월대의 공간구성 및 건축적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역사성으로 보아 수정전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사 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경복궁 수정전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복궁 수정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따로 붙임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따로 붙임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수정전은 외조 공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각으로 한글 창제의 본산인 집현전으로 사용되었으며, 고종 중반(1890년대) 대격변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건물이다. 뿐만 아니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과 건물의 위계에 맞게 간결하게 꾸민 모습 등이 궁전건축의 사료적 가치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한국건축사, ○○대학교, 교수
- : 보물
- : 경복궁 수정전

3. : 수정전은 신하들이 모여 국사를 논의하고 임금에게 전언하는 외조 영역인 근정전 서측에 놓여 있으며, 뒤쪽에는 경회루가 자리 잡고 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소실되기 전인 세종 연간에는 학문을 연구하며, 왕에게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던 기관으로 한글을 창제하는 등 문치의 본산 집현전이 있었던 곳으로 왕과 신하들의 영역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고종 때 중건된 이후에도 외조 영역에 자리 잡은 왕의 편전으로 사용하였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에는 대한제국의 군국기무처를 두었고 그 후에는 내각청사로 사용했다. 원래 사방을 둘러싼 행각과 남쪽의 외행각이 일곽을 이루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없어지고 현재의 본전 건물인 수정전만 남아 있다.

4. : 수정전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초기 왕조 실록에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복궁이 궁궐로써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조에는 집현전으로, 세조 때에는 예문관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며, 고종 4년(1867)에 근정전·사정전·경회루 등과 함께 중건하였다. 중건 당시에는 내외 행각이 있었으나 1915년 조선 정궁을 훼손하고 조선총독부를 세우고자 하는 일제의 전초 작업으로 조선시정 5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면서 모두 헐리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修政’의 뜻은 ‘정사를 잘 수행함’이란 의미로 현판 글씨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도승지를 지낸 조석원(1817~)이 썼다.

수정전은 정면 10칸, 측면 4칸 규모의 이익공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주간은 특이하게 정면의 양측 뒷간을 좁게 하고, 측면의 앞뒷간을 뒤퇴보다 배로 넓게 잡았다. 내부로 들어가면 넓게 잡은 앞뒷간에 툇마루를 두고 그 뒤편 2칸 후열 가운데에 3칸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각각 2칸과 3칸씩의 온돌방을 배열하였다. 대청과 온돌방 주위로 툇마루가 에워싸고 있어 마치 건물이 겹으로 싸인 듯하다. 건물의 외벽은 주간의 크기에 따라 머름 위에 2 또는 4분합 띠살문을 달고 그 상부에는 교창을 설치하였다.

전면에 월대를 마련하여 정면에 셋, 좌우측면에는 하나씩 화강석 돌계단을 설치했다. 정면 가운데 계단은 8단으로 이중 위쪽 5단만 소매돌을 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 바닥으로 마감한 화강암 장대석 높은 기단 위에 화강암 방형 초석을 놓고 네모 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이익공으로 날씬한 촛가지가 뻗어 있고, 주간에는 화반 대신 촛가지처럼 길게 뻗은 운공을 두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간결한 모습이다. 상부가구는 우물반자로 가려져 있는데, 반자널에는 ‘福’‘壽’ 등의 상서로운 문자문양 들이 그려져 있다. 옥개부는 양성을 바르고 용마루에는 취두, 귀마루에는 용두와 잡상으로 장식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경복궁 수정전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복궁 수정전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검토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지정가치 있음.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수정전은 근정전 서측에 있는 건물로써, 북으로는 경회루가 자리 잡고 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 없어지기 전인 세종 연간에는 학문을 연구하며, 왕에게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던 기관으로 한글을 창제하는 등 문치의 본산이었던 집현전이 있던 곳으로 왕의 영역과 신하들의 영역이 만나는 접점인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고종 때 중건되어 이후에도 외조공간에 자리 잡은 왕의 편전으로 사용되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에는 대한제국의 군국기무처를 여기에 두었으며, 이후 내각청사로 사용되었다. 4면에는 행각과 남쪽의 외행각이 일곽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일제 때 훼손되고 현재의 본전 건물인 수정전만 남아 있다.

○ 연혁 · 유래 및 특징

- 연혁

조선 초기 왕조실록에는 수정전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조선 초기에 작성된 경복궁 전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경복궁이 궁궐로써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종 조에는 집현전으로 사용되었으며 세조 때에는 예문관으로도 사용되었다. 그 후 선조25년(1592) 4월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복궁의 수많은 전각과 궁문이 모두 대화(大火)를 당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고종 4년(1867)에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등과 함께 중건되었다. 중건 당시에는 4면의 행각과 남쪽으로 외행각이 있었으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내부 벽체와 창호가 훼손되었고, 그 일곽 또한 1915년 가을에 조선의 정궁을 훼손하고 조선총독부를 세우고자 하는 일제의 전초작업으로 시정 5주년 기념사업인 조선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하면서 모두 헐리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정’이란 의미는 ‘정사를 잘 수행함’이란 의미로 현판글씨는 중건 당시 조선원이 썼으며, 조선 후기 문신으로 도승지에까지 이르렀으며, 글씨에 조예가 깊었다.

- 건축

건물은 고종 때 중요한 자료인 궁궐지에는 수정전과 이에 부속된 행각의 명칭, 규모, 양식, 주장, 주칸 등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며, 정면 10칸, 측면 4칸의 비교적 긴 장대한 건물로 남향으로 앉혀진 1고주 7랑가의 이익공양식 단층 팔작지붕이다.

수정전 정면에는 네 벌대의 넓은 월대를 갖춘 건물이다. 월대에는 정면에 계단을 3곳 설치하였고, 중앙의 계단은 소맷돌을 두어 좌우계단과 차별화시켰으며, 이것은 임금의 출입이 자주 있는 편전임을 의미한다. 다섯 벌대나 되는 높은 건물기단 위에는 4각 초석위에 각기둥을 세우고 띠살창 분합문과 빗살창교창을 사방 전면으로 둘러 설치하였다.

높은 기단의 좌우 측면에는 불을 넣는 아궁이를 설치하여 온돌방을 두었다.

평면은 정면10칸·측면4칸으로 앞면 퇴칸 주칸을 넓게 하여 10칸의 도리방향을 모두 대칭으로 터져있으며 좌우 및 후면의 퇴칸이 연결되어 내부 회랑 역할을 한다.

공포는 길게 뻗은 쇠서의 이익공 위에 소로를 높고 양봉한 보머리를 받으며 주심도리를 받아준다.

지붕의 용마루 및 내림마루엔 양성을 하고 취두·잡상을 배열했다. 건물의 짜임이 견고하고 창의력 있는 구조다.

○ 지정가치

수정전은 외관, 가구부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중건 당시의 모습이 잘 유지되어 있다. 또한 임진왜란(1592) 이전에는 한글창제의 본산인 집현전으로 사용되었으며, 고종 중반 우리 역사의 대격변기(1890년대)에 여러 제도가 급변할 때 중추적 역할을 했던 건물로써 사회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또한 광화문에서 근정전 서편에 해당하는 외조공간에서 궐내각사가 모두 훼손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3. 경복궁 향원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경복궁 향원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복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향원정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1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1.11.17) 검토 : 가결
-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30일간('11.12.08~'12.01.07)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경복궁 향원정(景福宮 香遠亭)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경복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번지 경복궁(사적 제117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양 식 : 2층 육모지붕, 익공집
 - 구 조 : 목조와가
 - 수 량 : 1동

라. 현지조사의견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경복궁 향원정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명예교수,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복궁 향원정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에서, 광화문·근정전·사정전·강녕전 등은 궁궐의 정문·정전·편전·침전으로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그 연장선의 궁궐 뒤편에 후원을 두고 거기에 향원정이 위치함이 중요 시설임을 입증한다. 향원정은 넓게 연못을 조성하고 그 중앙에 섬을 만들고 누정형의 2층 6모기와지붕이다. 내외1출목으로 운궁형으로 처리된 익공계 양식에 속하는 건축이다. 방지형의 연못에 원형의 섬을 만들어 섬의 중앙에 불룩하게 구름을 만들었다. 도중에 12각형의 평편한 택지를 조성하고 그 안에 다시 장대석으로 경계석을 설치한 한 변이 약 9m의 정6각형의 대지를 만들었다. 정6각형의 각을 이루는 경계석은 하나의 석재로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단도 6각형이며, 주간의 약3m의 정6각형 평면으로 된 2층의 정자형 6모기와지붕 건축이다. 1층 난간은 기단위에 난간동바리를 6각형의 석재 장주초석으로 된 평난간을 6각 전면에 돌려 설치했다. 2층 난간은 계자난간으로 하고 2층 난간 밑으로는 낙양각을 장식했다.		
	검토	경복궁 내의 후원으로 왕이 풍류, 접대 공간으로 활용했던 공간으로 경복궁 후원에 연지를 만들고 취로정을 지었다는 세종실록 2년(1456)의 기록은 향원정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4,605㎡의 넓은 연못 안에 있는 향원정은 고종10년(1873)에 만들어진 것이다. 설계 기획기준을 6의 숫자로 하여 6각대지, 6각기단, 6각동바리석주, 6각평면, 6모기와지붕으로 특성이 강한 건축계획사상 배경을 보여준다. 주간은 완자창 분합문으로 1층과 2층의 6면 설치했다. 1층의 남서쪽 기단에는 난간 밑으로 아궁이를 설치하여 1층을 온돌로 하고 2층에는 우물마루 바닥이다. 2층의 주간에는 기둥하부와 머름중방이 결구되는 곳에서 창방 중앙쪽으로 가새를 걸어 창방의 하중을 보강하고 있다. 2층 계자난간의 2층의 난간청판에는 투시조각이 아름답고 공간연출력이 높은 의도를 보인다.		
	④연혁·유래 및 특징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천원지방의 연못과 섬, 그리고 향원정은 하늘·땅·사람을 함께 하도록 잘 표현된 공간구성이다. 6이란 숫자의미를 충분히 활용한 건축계획도 자연을 존중한 건축사상임을 일깨워준다. 익공계 건축이면서 독특한 구조와 의장은 작은 규모에 견고하고 성실성있는 건축기술을 보여준다. 향원정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경복궁 향원정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복궁 향원정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따로 붙임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따로 붙임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향원정은 왕과 그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경복궁 후원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 안겨있는 상징적 대표 건물이다. 형체 특성상 특수한 기를 발산한다는 육각형의 공간을 구성하여 섬세하고 미려하게 다듬은 모든 구성요소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비례감이 뛰어난 정자로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한국건축사, ○○대학교, 교수
- : 보물
- : 경복궁 향원정

3. : 향원정은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 북쪽 후원에 자리 잡고 있다. 왕과 그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벗어나 친정체제로 구축하면서 정치적 자립의 일환으로 지은 건청궁 앞에 조성한 연못 가운데 섬을 만들고 세운 2층 정자이다. 남쪽으로는 함화당과 집경당이 위치하고 있다.

4. : 향원정은 고종 10년(1873) 건청궁을 건립하면서 세운 정자로 드나드는 나무다리 취향교는 원래 건청궁의 침전인 장안당 일곽에 속한 다리여서 북쪽에 있었는데, 1953년 남쪽으로 이설하였다. ‘香遠’은 ‘향기가 멀리간다’는 뜻으로 북송대 학자 주돈(1017~1073)이 지은 「애련설」에서 유래했다. 현판은 오른쪽 위에 ‘어필’이라는 전서체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고종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향원지의 북서쪽에는 뚜껑에 ‘열상진원’이라고 새겨진 우물이 있는데, 그 뜻은 ‘한강의 진짜 근원’이라는 의미로 한강의 근원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검룡소이지만 왕궁에서 흘러나온 물이 한강으로 유입되므로 상징적으로 이곳을 진원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육각형 장대석 외벌대 기단을 쌓아서 주형 초석을 놓고 육각주를 세운 2층 건물이다. 기단 밖으로 일정 거리를 띄운 곳에 경계석으로 또 하나의 육각형을 만들고 그 사이가 뜰이 되게 했다. 1층과 2층 주위에는 현함이 둘러져 있고 1층에는 평난간, 2층에는 계자각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난간 청판에는 여의두문을 투각하여 틈새로도 바깥 경치를 감상하게 하였으며, 2층 난간 밑에는 연화두형으로 낙양처럼 장식했다. 1층 오름 계단과 난간 사이 틈새에도 양측단을 미려하게 초각한 널로 막아 한 몸이 되게 하였다. 내부의 각 모서리마다 보이는 수지형의 보조재는 후대에 설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마치 나무 가지 사이로 바깥 경치를 감상하는 듯하다.

공포는 외1출목 익공양식이나 촛가지 모양새가 여느 익공과 달리 운궁처럼 궁글려서 부드러운 곡선미를 더해주고 있다. 천장은 각 모서리에서 중앙으로 모여져 작은 육각형을 이룬 반자로 봉황 문양 등이 그려져 있다. 옥개부는 겹처마 육모지붕으로 가운데 절병통을 올렸는데, 서까래와 부연 그리고 추녀와 사래의 규격을 건물 전체의 비례에 잘 어울리도록 자그마하게 하였다. 겹처마가 만든 두 개의 육각형과 아래쪽의 경계석, 기단, 현함, 평면이 이룬 육각형을 합쳐 모두 6개로 이 또한 고도의 조형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경복궁 향원정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경복궁 향원정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행에 따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지정가치 있음.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향원정은 경복궁 북쪽 후원에 있는 향원지 내의 작은 섬 위에 자리 잡고 있다. 향원지의 ‘香遠’은 ‘향기가 멀리간다’는 뜻으로 북송대 학자 주돈(1017~1073)이 지은 ‘애련설(愛蓮說)’에서 따온 말로서 왕이나 왕족들이 휴식하고 소요하던 침전의 후원으로 여기에는 향원지(香遠池)와 녹산(鹿山) 등 원림(苑林) 공간이 된다.

향원지는 세조 2년(1456)에 조성되어 취노정(翠露亭)이란 정자를 짓고 연꽃을 심었다는 기록이 「세조실록」에 보인다.

향원지는 4605m²의 넓이에 방형인데, 모를 둥글게 죽인 방형의 연지에는 연꽃과 수초가 자라고, 잉어 등 물고기가 살고 있다. 향원지의 수원(水源)은 북쪽 언덕 밑에 솟아나는 ‘열상진원(洌上眞源)’이라는 샘물이다. ‘열상진원’이란 말은 차고 맑은 물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차고 맑아서 건청궁의 식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열상진원의 샘물은 흘러 향원지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멈춤과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거친다. 물길을 따라 나온 물이 일단 둥근 수조에 모여 잠깐 멈추다가 반 바퀴 돌아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판석 밑으로 숨어든다. 잠깐 숨어들었다가 다시 남쪽으로 나타나 좁은 수로를 타고 연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흘러든 물은 연지에 머물다가 남쪽 호안에 뚫린 구멍으로 넘쳐들어 향원지 남쪽 함화당과 집경당 땅밧을 지나 나타나고 숨다가, 경회루 연지 동쪽호안의 용두의 입을 통해 연못으로 떨어진다.

향원정은 향원지의 가운데 섬 위에 건립된 육각형의 정자이다. 이 향원정에 들어가는 다리인 ‘취향교’는 목교로서 1873년에 설치되었다. 원래는 건청궁에서 향원정으로 들어가도록 북쪽에 있었던 다리인데, 6·25때 부서진 것을 1953년에 복구하면서 남쪽으로 옮겨 놓았다. 조선시대 원지에 놓인 목교로는 가장 긴 다리이다. (길이 32m, 폭 165cm)

현재다리 동쪽으로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인유문(麟遊門)이란 일각문(一角門)이 열렸었고 또 그 남쪽에 봉집문(鳳集門)이 있어 연못은 한층 아늑한 정취(情趣)에 싸여 있었다.

○ 연혁 ·유래 및 특징

향원정은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벗어나 친정체제를 구축하면서 정치적 자립의 일환으로 건청궁을 지었는데 그 건청궁 앞에 연못을 파서 그 가운데 섬을 만들고 세운 2층 정자로, 1867년(고종 4)부터 1873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향원정으로 가는 섬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취향교라는 다리가 있으며, 남쪽에는 함화당, 집경당이 위치해 있다. 정자의 평면은 정육각형으로 아래·위층이 똑같은 크기이며, 장대석으로 마무리한 낮은 기단 위에 육각형으로 된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일·이층을 관통하는 육모기둥을 세웠다.

공포(栢包)는 이층 기둥 위에 짜여지는데, 기둥 윗몸을 창방(昌枋)으로 결구하고 기둥 위에 주두(柱斗: 대접받침)를 놓고 끝이 둥글게 초각(草刻)된 헛침차를 놓았다. 일출목(一出目)의 행공침차(行工檐遮)를 받치고, 다시 소로를 두어 외목도리(外目道里) 밑의 장혀를 받친 물익공이다.

일층 평면은 바닥 주위로 평난간을 두른 뿔마루를 두었고, 이층 바닥 주위로는 계자난간을 두른 뿔마루를 두었다. 천장은 우물천장이며 사방둘레의 모든 칸에는 완자살창틀을 달았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육모지붕으로, 중앙의 추녀마루들이 모이는 중심점에 절병통(節瓶桶)을 얹어 치장하였다.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경복궁 후원 영역에 위치한 향원정은 왕과 그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궁궐 내 정자 건축물로써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4. 창덕궁 금천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창덕궁 금천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덕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금천교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1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1.11.17) 검토 : 가결
-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30일간('11.12.08~'12.01.07)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창덕궁 금천교(昌德宮 錦川橋)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창덕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창덕궁(사적 제122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양 식 : 홍예교
 - 구 조 : 석교
 - 수 량 : 1개소

라. 현지조사의견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금천교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명예교수,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금천교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창덕궁 돈화문을 들어서서 수 십m를 진입하면 동쪽으로 동선이 꺾이면 금천이 가로막고, 그 금천을 건너는 돌다리가 금천교이다. 2개의 홍예로 형성된 금천교는 길이가 12.9m, 폭이 12.5m이다. 다리 중간을 높게 하여 불룩하게 경사를 주고, 장대석으로 상판을 깔아 주었다. 가운데 길은 넓게 하여 왕의 어가가 지나도록 하고 양편의 호위군이 가는 길을 귀틀 형식으로 장대석을 깔아 3도 형식도로를 만들었다. 양편의 돌난간은 범수석주와 난간주석을 배치하여 5칸으로 하였고, 주간에는 하엽동자를 세우고 그 양편으로 풍혈을 뚫은 한 장으로 된 궁창판을 끼웠다. 두 홍예가 만나는 중앙바닥에는 높고 널따란 초석을 놓고 안쪽으로 홍예를 틀어 올리고 초석앞에는 해태상과 거북상을 올려놓았다. 두 홍예가 만나는 중앙의 삼각면에는 남북면 모두 괴면상을 부각한 석재를 끼워 놓아 풍수사상 및 주술적 의장을 했다. 금천교의 두 홍예는 각각 7개의 홍예석으로 쌓고 그 위에 무사석을 놓고 무사석 위에 난간지대석을 설치했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금천교는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이 건축되기 이전, 태종11년(1411)에 축조되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홍예석교이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서 정전인 인정전까지의 동선은 직각으로 2번 방향을 바뀌는 특이한 과정이다. 따라서 금천교는 금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다리는 동서로 진행하는 특징을 주며 더불어 진행과정에서 홍예모습과 장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창덕궁은 여러 번의 화재를 당하면서도 1411년 창건당시의 기법·소재·장식등이 원형대로 잘 보존된 편이다. 창덕궁의 역사를 대변할 뿐 아니라, 2개 홍예틀의 육중함이나 안정성, 풍수와 주술사상을 표현한 해태와 거북상 그리고 괴면장식 등은 조선초기의 건축사상을 대변하기도 한다. 더욱이 난간의 구조 하엽동자 및 궁창판의 의장은 우수하며 범수석주나 난간주석등의 장식과 구조가 우수하다. 경복궁 영제교, 창경궁 옥제교보다 원형을 유지한 오래된 궁궐 홍예교이고 의장성이		

		더욱 앞선다.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 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 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자연에 순응하며 풍수사상을 표현한 궁궐의 권위성이 잘 과시된 이중 홍예교로서 구조의 예술적 수준이 높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금천교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금천교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금천교는 돈화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곳에 있으며, 다리를 건너 들어가면 진선문이 나온다. 궁궐의 석교는 왕의 신성한 공간과 일반 공간을 구분 짓기 위하여 축조하는데, 경복궁과 창경궁에 각각 영제교와 옥천교가 있다. 지금은 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 옛 운치를 느낄 수 없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금천교는 태종 11년(1411)에 축조한 것으로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석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다. 다리는 두 개의 홍예를 짜서 교각으로 삼고 그 위에 귀틀을 설치하고 청판돌을 깔아서 상판을 만들었다. 상판 양 옆은 돌난간을 설치하였는데, 난간에는 양쪽에 각각 법수와 동자를 여섯 개씩 세우고 기둥 사이에는 모퉁이한 돌란대를 얹었다. 동자주 사이에는 돌란대를 받친 난간석판에 동자석을 양각하고 안상을 투각하였다. 두 홍예틀의 중앙 남쪽에는 홍예기석을 놓고 그 끝에 좌대를 설치하여 해치상을, 반대편에는 거북상을 올려 놓았다. 조각상 위쪽 홍예틀이 만나는 역삼각형의 면석에는 잡귀를 쫓는 귀면상이 양각되어 있고, 난간 법수 아래로 튀어나온 귀틀에도 서수가 조각되어 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금천교는 법도에 따라 왕의 신성한 공간과 일반 공간을 구분 짓기 위하여 축조한 석교로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미려한 홍예틀 위에 조밀하고 튼튼하게 짜 맞춘 탁월한 가구법과 궁궐의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각상 등이 돋보이는 다리로 보물로 지정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금천교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금천교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행에 따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지정가치 있음.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금천교는 창덕궁의 돈화문과 진선문(進善門) 사이를 지나가는 명당수(明堂水) 위에 설치되어 있다. 창덕궁의 명당수, 즉 금천(禁川)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 돈화문 오른쪽까지 와서 꺾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어구(御溝) 물가에는 화강석 6~7단을 가지런하게 쌓은 축대를 설치하였고, 여기에 금천교를 설치하여 꺾내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경복궁 영제교(永濟橋)나 창경궁 옥천교(玉泉橋)가 정전 남면을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명당수 위에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창덕궁과 경희궁 어구의 돌다리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명당수 위에 동서 방향으로 설치되었다.

이 다리는 창경궁의 옥천교(玉川橋)보다 폭이 넓고 짜임새가 정치(精緻)하며 부재(部材)의 비율이 빈틈없이 잡혀 있어 그 구조가 펍 아름답다.

○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혁

금천교는 창덕궁이 창건되고 6년 뒤인 1411년(태종 11) 3월 진선문 밖 어구에 설치되었는데, 그 후 숭한 화재와 전란에도 불구하고 창건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현존하는 궁궐 안 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 건축

규모는 의장(儀杖)을 갖춘 국왕의 행차 때 노부(鹵簿)의 폭에 맞도록 설정되었으며, 상면은 길이 12.9m, 너비 12.5m로 정사각형에 가까울 정도로 폭이 넓다.

구조는 하천 바닥의 중앙과 물가에 놓인 기반석을 토대로 홍예를 2개 틈 형식으로 물가의 축대는 부벽(扶壁) 구실을 하고 있으며, 홍예 위에는 장대석 모양의 멍에돌을 얹었다. 다리의 상면은 불룩하게 곡면으로 만들고 바닥을 3칸으로 구분하여 칸마다 장대석을 고르게 깔았으며, 다리 가장자리에는 그 위에 동물상을 조간한 이주석이 세워져 있다.

난간은 머리 부분을 연화보주형(蓮花寶珠形)으로 장식한 법수와 그 사이에 세운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석은 하엽동자기둥[荷葉童子柱] 모양의 부조를 중심으로 2칸으로 분절되었고 칸마다 4잎형 안상을 투각하여 놓았다.

법수 밑에는 멍에돌 위치에서 돌출된 석재에 짐승머리모양을 환조(丸彫)로 조각하였다. 다리 측면의 홍예 사이 벽에는 귀면형(鬼面形)이 부조되어 있고, 그 아래쪽의 홍예 기반석 위에는 남쪽에 해태상, 북쪽에 거북이상 등 환조로 만든 동물상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금천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돌다리로서 아름다운 문양과 견고하고 장중한 축조 기술에 있어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5. 창덕궁 부용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창덕궁 부용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덕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부용정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1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1.11.17) 검토 : 가결
-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30일간('11.12.08~'12.01.07)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창덕궁 부용정(昌德宮 芙蓉亭)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창덕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창덕궁(사적 제122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양 식 : 1층 팔작지붕/십자형 평면(서측면 4칸, 남측면 5칸, 북측면 3칸)
 - 구 조 : 목조와가
 - 수 량 : 1동

라. 현지조사의견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부용정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한국건축사		
		명예교수,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① 문화재 종류	보물		
	② 문화재 명칭	국가지정문화재 창덕궁 부용정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창덕궁의 후원 영역 한 편에 부용지를 만들고, 동쪽에는 영화당, 서쪽에는 사정비각, 남쪽에 부용정이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 어수문을 지나 5단의 화계위에 주합루와 서향각이 위치하는 절경의 공간이 있다. 부용정은 부용지와 함께 존재의미를 가진다. 천원방지를 인공으로 34.5m×29.4m의 4각형 연못을 만들고, 그 가운데 직경 9m의 둥근 섬을 만들어, 땅과 하늘을 연출하고 부용정에 자리하는 사람과 함께 하늘·땅·사람을 한자리에 있게 하여 선경에 선인의 풍류를 즐기도록 했다. 정면3칸·측면3칸의 기본 평면을 변형하여, 십자(十 字)형태 평면으로 의미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장주초석을 연못 안에 세워, 연못 안으로 1칸을 돌출시켜 루 마루식 형식을 이룬다. 진입은 3면에서 할 수 있게 하고, 평난간을 두었으나 루 마루식 공간에는 계자난간을 설치하여 차별화했다. 아주 작은 공간에 복잡한 평면에 따른 지붕조형성이 우수하다. 겹처마 팔작기와지붕의 이익공양식 정자 건축이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궁궐지에 의하면 숙종33년(1707)에 세운 택수재를 정조16년(1792) 다시 건축하여 부용정이라고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약 220년 전의 건물이다. 왕이 풍류를 즐기거나, 신하들과 함께 사회를 갖기도 하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대면하고 격려하던 곳이었다. 외부의 창호로 띠살창 분합문으로 하였으나 루마루의 창살은 완자창살분합문으로 차별화했다. 규모가 작은 공간을 평면변형하여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한가운데 칸과 루 마루식 한 칸을 한 공간으로 구성했으나 루마루 공간의 바닥은 중앙의 바닥보다 한 단 높여 마루를 깔았다. 즉 루마루 공간은 연못 안에 있고 창살을 달리하고, 바닥도 높게 했고 난간도 계자난간으로 격식 높게 공간을 연출했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연못을 만들고, 루 마루식 정자를 연못에 인접하여 자연의 선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풍류를 통해 수양을 하는 한국정자건축의 대표적 작품이다.		

		8각초석에 원기둥을 세웠고 루마루의 기둥은 8각 장주초석을 연못에 세워 그 위에 기둥을 4면으로 보강한 풍련같은 부재를 덧대어 난간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익공의 쇠서는 수서로 처리하고 소로를 받고 그 위로 장여와 도리를 받고 있다. 익공 위로 장연과 부연의 배치, 그리고 처마곡선의 구성은 공예적 부재미를 느끼게 한다. 부재의 짜임새와 부재가 공기술과 의장성은 정자건축의 아름다움을 과시했으며, 실내외의 공간구성이 대단히 우수하다.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정자건축은 인공적으로 자연의 선경을 만들고 거기서 풍류를 즐기며 정선수양을 하는 곳이다. 그 건축적 사상과 방법이 잘 적용된 부용정은 부용지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관리가 요구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부용정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보물		
	② 문화재 명칭	국가지정문화재 창덕궁 부용정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따로 붙임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따로 붙임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따로 붙임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한국건축사, ○○대학교, 교수
- : 보물
- : 창덕궁 부용정

3. : 부용정은 후원으로 들어서는 언덕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용지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부용지는 세 면의 경사지가 모이는 중심에 원형 석가산을 가운데 둔 방형의 연못이다. 동쪽 트인 곳에는 영화당이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고, 북쪽으로는 어수문이 바라보이고 그 위쪽의 높은 석대 위에는 중층 주합루가 높이 솟아 있다. 주합루 왼쪽으로는 서향각이, 서향각 뒤쪽 높은 곳에는 희우정이 놓여 있다. 부용지 서측에는 이곳에서 찾아낸 ‘마니·파리·유리·옥정’이라는 네 개의 샘에 대한 기록을 새긴 사정기비를 보호하고 있는 작은 비각이 하나 있다. 부용지 주변에 지금보다 더 많은 건물들이 있었음을 〈동궐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영화당 남쪽으로는 출입문을 둔 행각이, 어수문 좌우로는 담장이, 서향각 서쪽의 높은 곳에도 건물이 그려져 있다.

부용지는 장방형 연못으로 애련지와 함께 후원의 대표적 방지이다. 연못 한 가운데 조성한 원형은 섬은 天圓地方이라는 동양우주관에 따른 조형원리를 구현한 것으로 이곳에는 원래 현종 대에 지은 淸暑亭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연못의 남동쪽 모서리 장대석 석축의 상단 물 쪽 면에 물고기 한 마리가 양각되어 있다. 이는 등용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 의미는 어수문과 주합루로 이어지는데, 당시 선비들이 이곳 어수문을 통해 주합루에 올라 학문을 하는 것이 최대의 입신양명으로 잉어가 물 위를 뛰어 올라 용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4. : 부용정은 『궁궐지』의 기록을 보면 원래 숙종 33년(1707)에 세운 澤水齋였던 것을 정조 16년(1792)에 다시 짓고 이름을 바꾸었다. 이곳에서 왕이 신하들과 풍류를 즐기며 시를 읊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맞이하여 격려하던 곳이기도 하다.

평면은 중앙에 1칸을 두고 네 방향으로 1칸 씩 돌출시킨 十字形의 배면 직교 부분에 1/4 크기를 더 부친 독특한 형태로 보기 드문 모습이다. 더 부쳐진 작은 공간은 통로 구실을 하고 있다. 내부는 모두 마루를 깔았는데, 연못 위에 놓인 북쪽 1칸은 바닥을 한 단 높여 누마루 같은 특별한 공간이 되게 했다. 건물 주위에는 쪽마루를 두르고 동·서·남측에 계단을 설치하여 내외부 출입 동선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난간은 동·서쪽 계단 면과 연못 방향의 북쪽 면 모두에는 화려한 계자각난간으로 장식하고 남쪽의 나

머지 면에는 평난간을 설치하여 대비되게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중앙 1칸의 사방과 건물 외부에 전부 창호를 시설하였는데, 이로 인해 건물 전체가 큰 마루방이 되고 그 속에 중앙과 북쪽에 각각 1칸씩의 독립된 마루방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들 창호는 전부 들어열개로 모두 열면 아름다운 정자의 내부 공간과 연못의 선경이 상호 관입되는 부용정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창호의 살대 문양을 공간별로 다양하게 베풀어 부용정 고유의 이채로움을 더해 주고 있다. 중앙 마루방의 동·서쪽에는 각각 사각형 및 팔각형과 귀갑살 불발기 맹장지를, 북쪽 누마루 공간에는 완자살 명장지를, 나머지는 띠살 창호를 달았다. 구조양식은 팔각형 초석 위에 원주를 세워 팔각형 주두를 놓고 이익공 공포를 엮었다. 북쪽 누마루는 팔각주형 초석을 연못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초각한 까치발을 받쳐 돋보이게 하였다. 주간에는 당초 문양 화반이 도리와 장혀를 받고 그 위로 겹쳐마 팔작지붕이 올려져있다. 독특한 평면 형태에 빈틈없이 올려 진 지붕의 미려한 곡선과 다소 세장한 기둥과 서까래 및 부연 등과 비례적으로 잘 어울리게 꾸민 난간과 익공 쇠서 등이 부용정의 뛰어난 조형을 엿보게 한다. 단청은 익공쇠서·화반·서까래 마구리와 보이지 않는 내부 우물반자에만 색채 문양을 시채하고 나머지는 굵기로 한 것은 주위의 자연을 풍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고차원의 배려가 아닌가 싶다.

： 부용정은 창덕궁 후원 초입에 천원지방의 조형원리에 따라 조성한 대표적 방지에 지은 왕의 휴양소로 자연과의 유기적인 상호관입을 이루기 위한 독특한 평면 형태 및 공간구성과 건물의 구성요소와 장식들을 뛰어난 비례와 대비를 적용하여 조화롭게 꾸민 높은 차원의 조영사상을 보여주고 있어 한 짝인 부용지를 포함하여 보물로 지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부용정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소 속		한국건축사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부용정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검토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행에 따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검토				
종합의견		지정가치 있음.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창덕궁에서 후원으로 가는 길은 현재는 내의원으로 불리는 건물군을 왼쪽으로 끼고 담으로 좌우를 막은 통로를 이용하게 된다. 이 통로는 약간 오르막길로 되어 있으며 길은 좌측으로 꺾이면서 내리막길로 변하는데 그 지점에서 부용지 일대의 모습이 내려다 보인다. 3면이 경사지이며 경사가 모이는 한가운데에 방형(方形)의 연못이 부용지가 있다. ‘부용(芙蓉)’은 ‘연꽃’을 뜻하는데, 창덕궁 후원의 대표적인 방지(方池)이다. 동서 길이가 34.5m, 남북 길이가 29.4m에 이르는 방형의 연못으로, 연못 중앙에는 소나무를 심은 작은 섬이 하나 떠 있다.

부용지의 네모난 연못과 둥근 섬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연못은 장대석으로 쌓아올렸고, 남쪽 모서리에는 물고기 조각이 하나 있다. 잉어 한 마리가 물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새겼는데, 이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에 빗댄 것이다.

이 연못의 남쪽 변에 부용정이 자리잡고 있는데, 부용정의 남쪽은 낮은 언덕에 면하고 있다. 현관이 걸려 있는 동쪽이 건물의 정면인데, 이는 이곳의 지형이 남·북·서 삼면이 낮은 언덕으로 둘러 있고, 동쪽만이 흰하게 트여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변을 보면 남쪽 언덕에는 3단의 화계(花階)를 설치하고 꽃을 심고 수석을 배치하여 정원을 꾸며 놓았으며, 북쪽 연못에는 가운데에 섬 하나를 쌓고 그 뒤로 높은 언덕에 어수문(魚水門)과 주합루(宙合樓) 일곽이 보이도록 하였다.

주합루의 왼쪽으로는 서향각(書香閣)이 있으며 주합루의 뒤 2단의 석대 위에 제월광풍관(霽月光風觀)이라는 편액의 작은 건물이 있다. 서향각의 뒤 높은 곳에 희우정이 있다. 연못의 서측에는 서정기비각(西井記碑閣)이 있다. 그런데 이 일대에 대한 〈동궐도(東闕圖)〉의 묘사는 현재보다 건물이 더 있었음을 알려준다. 즉 영화당의 남쪽으로는 행각(行閣)이 있고 그 사이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어수문 좌우로는 담장이 길게 있었고, 서향각 서쪽의 높은 지대에도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혁

부용정은 《궁궐지》에 따르면 조선 숙종 33년(1707)에 이곳에 택수재(澤水齋)를 지었는데, 정조 때에 이를 고쳐 짓고 이름을 ‘부용정(芙蓉亭)’이라 바꾸었다고 한다. 『동국여지비고』에는 “주합루 남쪽 연못가에 있다. 연못 안에 채색하고 비단 돛을 단 배가 있어, 정조 임금께서 꽃을 감상하고 고기를 낚던 곳이다”라고 하여 이곳에서 왕이 과거에 급제한 이들에게 주연을 베풀고 축하해 주기도 했으며, 신하들과 어울려 꽃을 즐기고 시를 읊기도 하였는데, 1795년 수원 화성을 다녀온 정조가 신하들과 낚시를 즐겼

다고 전한다. 기둥에는 이곳의 풍광을 읊은 시를 적은 주련(柱聯) 10개가 걸려 있다.

- 건축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4칸, 배면 3칸의 누각으로 연못 남쪽 위에서 봤을 때 열 십(十)자 모양을 기본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동과 남서쪽에 반칸을 덧대서 소통을 원활히 하였다. 남북 중심축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과 서쪽이 좌우대칭이다. 연못 안에 2개의 팔각 석주를 세운 다음 그 위에 가느다란 원기둥을 세우고 건물의 비례에 맞게 양증맞은 2익공(二翼工) 공포를 짜 올렸다. 정자 안은 네 개의 방을 배치했는데, 배면의 방이 다른 방들보다 한 단계 높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의 단층이다.

외관을 보면 북쪽은 간결하고 남쪽은 화려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며, 풍부한 형태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난간과 창호도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난간은 평난간과 계자난간(鷄子欄干)을 두었는데, 특히 북쪽 연못 부분의 난간은 다른 곳보다 한 단 높게 하여 변화를 주었다.

창호를 보면 외부 창은 연못으로 내민 부분에만 亞자살문을 달고, 그 밖의 다른 곳은 모두 띠살문으로 하였으며, 들쇠에 매달면 사방으로 트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부에는 정자살문과 팔각형 교살창을 낸 불발기창을 두어 안팎 공간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였다.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세밀하고 정교하게 지어진 건축물로 자연스럽고 독특한, 고유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6. 창덕궁 낙선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창덕궁 낙선재 일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덕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낙선재 일곽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1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1.11.17) 검토 : 가결
-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30일간('11.12.08~'12.01.07)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창덕궁 낙선재(昌德宮 樂善齋)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창덕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창덕궁(사적 제122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양 식 : 1층 팔작지붕/정면 6칸, 측면 2칸
 - 구 조 : 목조와가
 - 수 량 : 1동

라. 현지조사의견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다만 낙선재 이외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낙선재만 지정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다만 낙선재 이외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낙선재만 지정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다만 낙선재 이외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낙선재만 지정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낙선재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명예교수,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낙선재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인정전에서 동쪽으로 창경궁과 종묘가 접하는 사이에 낙선재, 석복헌, 수강재가 각각 행랑을 가지고 연속해서 남향으로 지어졌고, 뒤편에는 화계와 정자건축이 아름답다. 헌종13년(1847)에 헌종 후궁인 경빈김씨를 맞이하여 세운 건물로 왕조의 마지막으로 영친왕 이근씨가 살았으며 이방자여사가 1966년부터 1989년까지 기거하시다 돌아가셨다. 그 후 건축 및 주변 환경을 수리·정비하여 지금에 이른다. 낙선재는 근년에 계속 사용되었기에 원형을 잘 보존한 편이나 석복헌과 수강재는 많은 변형이 있고 신재도 교체된 부분이 많으며, 사대부 주택형식에 비해 우수한 건축은 못된다. 낙선재는 다른 건축보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의장이 많고 궁궐침전건축과 다른 사대부주택형식으로 단청이 없는 정면6칸·측면2칸으로 단층, 팔작기와지붕이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헌종이 후궁의 거처로 건축하여서인지 궁궐침전의 건축양식이 아닌 사대부주택형식으로 지었다. 낙선재 정면 회랑의 서측으로 치우쳐있는 장락문을 들어서면 낙선재 안마당 건너 누마루와 맞선다. 정면6칸의 서측1칸을 마당으로 내밀면서 높은 4각 석재의 장주초를 세워 누마루를 구성했다. 누마루에는 난간이 없고 섬세한 완자창 분합문으로 둘러주고 장주초와 하인방사이의 주간은 낙양장식으로 아름답게 처리했다. 세벌대 기단위의 낙선재는 양면으로 온돌방을 두고 중간3칸을 대청마루로 했다. 교창의 창살이 아름답고 세련미가 있으며, 대청과 안방의 원형개구부와 창호는 대단한 수준급으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기둥은 방주로 하고 기둥머리에서 대량을 받고 도리를 결구했다. 창방 위에 소로를 놓고 장여를 받아 도리를 엮었다. 창방뿔목을 조각하여 익공과의 조화를 이루고, 보와 기둥의 결구에는 연속곡선으로 다듬어진 보아지가 아름답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 지정 대상 및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범 위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 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 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궁궐 내의 침전건축과는 달리 사대부 주택을 기준한 주택으로 건축되었으나, 궁궐 침전형식이 응용되었으며 부재 가공기술 및 의장성이 우수하다. 조선왕가의 실제 침전으로 사용된 역사성도 중요하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가 요구된다.(단, 낙선재 이외의 건축은 제외하고 낙선재만 지정)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낙선재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낙선재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따로 붙임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따로 붙임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방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따로 붙임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한국건축사, ○○대학교, 교수
- : 보물
- : 창덕궁 낙선재 일곽

3. : 낙선재 일곽은 창덕궁과 창경궁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맨 좌측에 낙선재가 크게 자리 잡고 그 우측으로 석복헌과 수강재가 연이어져 있으며, 이들 뒤편에는 화초·석물·꽃담 굴뚝 등으로 가꾸어진 아름다운 화계와 그 위의 꽃담 너머로는 상량정·한정당·취운정 있어서 위용을 더해주고 있다.

원래 왕의 연침공간 구성을 목적으로 낙선재가 지어지고 이듬해에 빈의 처소를 위하여 석복헌을 짓고 수강재를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궁궐 안에 사대부주택형식으로 지은 건물로는 낙선재와 연경당 뿐이다.

4. : 낙선재는 현종 13년(1847)에 왕이 왕비와 대왕대비를 위해 마련하여 조선 왕실의 권위를 확립하고 자신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했다. 1884년 갑신정변 직후 고종의 집무소로 사용하고 그 후 조선왕조 마지막 영친왕 이은이 1963년부터 1970년까지 살았으며, 1966년부터 1989년까지는 이방자여사가 기거하였다. 낙선재는 비교적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나 석복헌과 수강재는 상당 부분이 변형되어 있다.

낙선재는 남행각에 나있는 정문인 장락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 건너에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로 자리 잡고 그 좌측에 서행각이 남행각과 직교로 연결해 있다. 맨 좌측에 앞으로 돌출한 1칸이 주형초석 위에 놓여 누마루가 되면서 시선을 끈다. 누마루 뒤로는 온돌방 1칸을 두고 그 우측으로 대청 2칸·온돌방 2칸·다락방 1칸을 배열하였으며, 다락방 배면에도 흔치 않은 온돌방을 돌출되게 두었다. 2칸 대청과 온돌방 앞에는 툇마루가 시설되어 있고, 건물 뒤편에는 쪽마루가 길게 깔려 있어 공간 간 이동이 편리하다. 이 건물에는 궁궐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다양한 문양의 창호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누마루와 그 뒤 온돌방 사이의 만월문은 단연 돋보이는 백미로 누마루 공간의 위계를 읽게 한다.

구조양식은 잘 다듬은 화강석 바른 층 쌓기 한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네 모기둥을 세운 물익공 겹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물익공은 당초문양으로 세련되게 조각하고 보머리와 보아지도 같은 수법으로 품위 있게 장식하여 궁궐의 면모를 갖추게 했다. 주간은 소로로 수장하고, 누마루의 머름대 아래에는 아름답게 조각한 낙양이 장식되어

있어 누 부분이 더욱 돋보인다. 상부가구는 몸채는 5량 가로, 누마루는 3량 가로 가구하고 미려하게 다듬은 대량 위에 당초문양을 양각한 화려한 제형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했다.

： 낙선재는 사치스러움을 배격하고자 했던 헌종의 뜻에 따라 여느 궁궐 침전과는 달리 단청을 하지 않고 사대부주택형식으로 지은 귀한 주거용 건물로 근년까지 조선 왕가 침전으로 사용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건물의 부재들을 고도의 치목 수법으로 다듬어 미려함이 돋보일 뿐 아니라 익공·보아지·대공·낙양 장식과 다양한 창호 살대문양 등도 수준 높은 궁궐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어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옛 모습을 상당부분 잃고 있는 석복헌과 수강재까지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낙선재 일곽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소 속		한국건축사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낙선재 일곽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행에 따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낙선재는 창덕궁에 있는 조선 후기의 건물로 주택풍의 연속된 건물 세 채와 후원이 연결되어 있다. 건물이 위치한 곳은 궁의 동쪽 건양문(建陽門) 밖으로 이곳은 원래 태조가 임종한 광연정(廣延亭)이 있던 자리이며, 뒤에 왕세자의 처소인 저승전(儲承殿)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건물 구성은 낙선재, 석복헌, 수강재 세 건물이 옆으로 길게 붙어 있고, 그 뒤편에 자연스럽게 후원이 조성되었다.

후원 높은 위치에는 취운정(翠雲亭), 한정당(閒靜堂), 상량정(上涼亭)이 있다. 낙선재의 앞과 오른쪽에는 행랑이 있어서 외부와 경계를 짓고 있다.

○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혁

이 건물은 본래 국상(國喪)을 당한 왕후들이 소복(素服)을 입고 은거하던 곳이므로 상중에 근신하는 왕후가 소박한 건물에서 예를 갖추는 법도를 지키도록 하여 단청도 하지 않았다. 후원은 절제되면서도 조화 있는 조경으로 꾸며져 있다. 1846년(헌종 12) 창건되었다. 또한, 1926년 순종이 죽은 뒤 윤비(尹妃 : 순명효황후)가 이곳에서 은거하다 별세하였고, 1963년 일본에서 환국한 영친왕 이은(李垕)도 이곳에서 생애를 마쳤으며, 1966에서 1989년까지 이방자 여사 기거하였다.

- 건축

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ㄱ’자형의 낙선재가 나타난다. 사대부들의 주택 사랑채 형태의 소박한 건물로 정면 6칸, 측면 2칸에 누마루 등이 딸려 있는데, 모두 17칸반의 규모이다. 장대석을 반듯하게 다듬은 기단 위에 네모난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으며, 기둥 위에는 간결한 형식의 익공을 끼웠다.

가운데 3칸은 퇴를 개방하였고 나머지는 분합문이나 회벽으로 벽체를 꾸몄는데, 분합문의 창살무늬가 다양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여성들이 머무르는 궁중의 건물다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누마루 아래에 아궁이를 설치한 벽에는 작은 돌을 불규칙하게 붙여 자유롭고도 아름다운 벽면을 장식하였다.

낙선재의 동쪽으로 잇대어서 석복헌이 있는데 이 건물도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이며, 다시 석복헌에 이어서 동쪽으로 같은 규모의 수강재가 있다.

이 세 건물 사이에는 행랑이나 담이 있어서 서로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세 건물 뒤로 조성된 후원은 장대석으로 여러 단의 화계(花階)를 꾸미고 각 단에는 사철에 알맞은 화초를 심었으며, 건물에서 연결되어 나온 굴뚝이 조경의 한 요소로 꾸며져 있기도 하다.

후원의 담장은 벽돌을 구워 다양한 형태의 무늬를 벽에 치장하였는데, 장수(長壽)무늬,

고리무늬, 석쇠무늬 등이 꾸며져 있다.

후원 동쪽에는 꽃무늬 담장 사이에 월광문이라는 출입문이 나 있는데 완전한 원형을 이루고 있고, 안쪽에 좌우로 미닫이 판문이 달려 있다.

후원 맨 뒤쪽에는 별당인 한정당이 있다. 사대부주택의 별당과 같은 간결한 구조의 건물로 한 끝에 누마루를 갖추고 있다. 집 앞뜰은 잘 정돈된 수목을 심었고 그 사이로 괴석(怪石)들을 놓아 아름다우면서 담백한 정원을 이루고 있다.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낙선재 일곽의 건물은 후원의 빼어난 조경으로 더욱 돋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문양의 장식이 특히 주목되며, 조선 후기 건축 장인(匠人)들의 축적된 기량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마지막황실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건축물로 아름다운 화계와 독특한 창살문양 등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다. 그러나 건립시기 등을 고려하여 낙선재만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7.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단독주택 신축(강○○)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에 해당됨.
 - ※ 2011년 8차 회의시 인접부지인 602-1번지에 2층 건물이 허가된 사항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1174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622-1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으로부터 약470m
 - 사업내용(단독주택 신축)
 - 부지면적 : 700㎡
 - 건축면적(연면적) : 74.30㎡(87.1㎡)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2층, 8.8m

라. 지방자치단체(강진군) 의견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470m이격되어 있고 인근 필지도 허가를 득하여 신

축된 곳으로 문화재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무위사에서 약 470m 이격된 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사찰에서 멀고 산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8.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단독주택 신축(정○○)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에 해당됨.
 - ※ 2011년 8차 회의시 인접부지인 602-1번지에 2층 건물이 허가된 사항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1174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622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으로부터 약470m
 - 사업내용(단독주택 신축)
 - 부지면적 : 660㎡
 - 건축면적 : 100.72㎡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7.2m

라. 지방자치단체(강진군) 의견

-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원색계열 색상은 제한함.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무위사에서 약 470m 이격된 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사찰에서 멀고 산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9.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나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성북동 142-4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 사업내용 : 도시계획 도로개설
 - 개설길이 : 길이 68m, 폭 8m
 - 도로하부 우수관 및 오수관 매설

라. 지방자치단체(나주시) 의견

- 문화재의 가시권에 위치하지 않으며, 기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로 개설하는 부분으로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으로부터 약 300m 이격된 부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은 도시가 형성된 지역임.
-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며, 문화재에서 거리가 멀고 도시가 형성된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0. 고흥 능가사 대웅전 주변 관풍료 개축

가. 제안사항

전남 고흥군 소재 보물 「고흥 능가사 대웅전」 주변 관풍료를 개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고흥군 소재 보물 「고흥 능가사 대웅전」 주변 관풍료를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고흥군수
- (2) 대상문화재 : 고흥 능가사 대웅전
 - 소 재 지 :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69번지
 - 지 정 일 : 2001. 02. 2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69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관풍료 개축
 - 건축면적 : 58.43㎡
 - 건축구조 : 전통 한식목구조
 - 양식 : 정면 3칸, 측면 2칸, 물익공, 5량가 맞배집
 - 최고높이 : 6.56m

라. 지방자치단체(고흥군) 의견

- 관풍료가 노후 불량이므로 문화재 주변경관에 부합되도록 개축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능가사 대웅전 주변에 기존의 시멘트블록조 골함석지붕의 요사채를 철거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한식으로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기존의 낙후된 요사채를 한식으로 개축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의 규모 및 양식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999년도에 실측된 배치도를 보면 현재의 배치도와 많은 부분이 상이하고 조선시대까지 많은 전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요사채의 건립위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고 신축시에는 시굴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사항

- 연혁 : 조선 숙종 16년(1690) 목덕스님이 세운 능가사 사적비에 의하면 신라 눌지왕 3년(419)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였고, 창건 당시에는 ‘보현사’라 이름하였으며,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 버린 것을 인조 22년(1644) 정현대사가 다시 건물을 지어 ‘능가사’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 규모 : 조선 숙종 14년(1688)까지 40여개의 전각과 11개의 암자를 가진 대찰이었다.
 - 전당 : 대웅전, 팔상전, 도원당 등 36개
 - 문루 : 일주문, 사천왕문, 대루 등 5개
 - 암자 : 서불암, 만경암 등 11개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8명, 조건부가결 1명

11.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국사전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안성시 소재 보물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에 국사전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 안성시 소재 보물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에 국사전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안성시장
- (2) 대상문화재 :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4번지
 - 지 정 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4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국사전 건립
 - 건축면적 : 30.24m²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양식 : 정면 3칸, 측면 2칸, 다포 맞배집
 - 최고높이 : 7.54m

라. 지방자치단체(안성시) 의견

- 국사전 건립을 통하여 칠장사의 전통사찰로서의 품위회복과 전통문화 보존으로 자긍심을 고취 등 필요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칠장사 경내에 국사전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해소국사비와 관련하여 국사전을 신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건물의 규모와 배치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청건물은 다포양식으로 인접한 원통전이 출목익공식임을 감안하여 양식을 간소화함이 좋겠음. 또한, 신청부지가 사찰의 주불전 인근이므로 시굴조사를 선행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의 양식을 간소화하고, 시굴조사를 선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2.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보물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북 남원시 소재 보물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92-1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신촌동 1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약34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569㎡
 - 건축면적(연면적) : 104.95㎡(1동 82.27㎡, 2동 22.68㎡)
 - 건축구조 : 조적조(블록)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5.4m

라. 지방자치단체(남원시) 의견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 허가 대상임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구역에서 약 340m 이격된 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용담사지 하천 건너편이고 산능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하천 건너 보이지 않는 지역이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 지역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3.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88-11
 - 사업내용 : 기존건물 철거(62.14㎡) 후 단독주택 신축(99.36㎡)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약100m
 - 대지면적 : 352㎡
 - 건축면적(연면적) : 133.22㎡(99.36㎡)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4.7m

라. 지방자치단체(칠곡군) 의견

-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단독주택 1층 30평 미만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송림사 오층전탑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된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에는 단층의 기존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 주변에는 농가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이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역과 가까운 지역이므로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의 형태를 조정하고, 매장유구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포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에 건물형태가 어울리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14.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금괴관련 굴착(2차)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금괴관련 굴착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금괴관련 굴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 ‘12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1.19) 심의결과: 부결
 - 제시된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인 동화사의 대웅전의 기단을 굴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공신력있는 탐사기관에서 금괴가 매장되었다는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고,
 - 발굴·시공과정 등이 명확히 제시될 경우 재심의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동화사 대웅전
 - 소재지 : 대구 동구 도학동 35번지
 - 지정일 : 2008. 04.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동구 도학동 35번지(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 금괴관련 굴착 및 복구
 - 굴착내용 : 넓이-800×1,200mm, 깊이-매장물 위치까지 1.2m
 - 굴착방법 : 인력,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굴착
 - 복구방법 : 인력, 되메우기 시 100mm씩 복토 후 다짐, 판석 줄눈 시공
- (4) 참고자료

- 신청이유, GPR탐사의견서, 동의서(동화사) : 붙임

라. 지방자치단체(동구) 의견

- 현상변경 행위를 진행하려는 부분은 보물 제1563호 대구 동화사 대웅전 당해문화재로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배면 서측 기단의 일부를 굴착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재신청한 상황임.
- 신청위치는 대웅전 기단으로 굴착 시 당해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있고, 향후 유사사례(금괴 매립 근거 불명확) 발생 시의 처리방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위원회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발굴이나 시공방법에 대하여 자료가 미비하므로 구체적인 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문화재(동화사 대웅전)의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시공계획서 제출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붙임 1> 신청이유

신 청 이 유

1. 이 신청은 대구광역시 동구 2012. 1. 13. 접수 제2012-3420000-0003905호
관련사안입니다.

1. 신청인은 2009. 3.경 탈북하여 주소지에 정착하여 살고 있고, 탈북한 이유는
북한의 정치범 감옥에서 인간이하의 학대와 고통을 받았고, 그 후 다른 일로
체포되기 전에 사생결단으로 두만강을 건너 2개월이상 걸어서 천신만고 끝에
태국으로 가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1. 신청인은 북한에서 14년동안 하전사(군인) 복무를 하였고, 동정심이 많아 여
러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왔고, 그 중의 한사람과 양부자관계를 맺어
친아버지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양아버지를 도
와드리던 중 양아버지는 신청인도 일본에서 온 재일교포의 자식으로서 천대
를 받는 사실을 알고 어렵게 자신의 출신을 말하면서(북한에서는 토대와 출
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분이며, 일본과 남한에서 북으로 온 사람은 제
일 좋지 않은 성분으로 취급됨) 6·25 동란과정에 양아버지의 아버지는 사
망하고, 자신은 북으로 끌려와서 정착하게 된 사연을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
았으며,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아 고향에는 못갈 것 같다고 말하면서, 탈



북하여 남한으로 가겠다고 말한 신청인에게 남한으로 가면 자신이 말하는데
로 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1. 양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6·25전에 서울에서 도자기 사업을 하면서 많
은 돈을 벌었는데 동란이 발발하자 가족들은 전재산을 금으로 바꾸어 선대들
의 고향인 대구부근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고, 1950. 8.경 북한군이 대구 근
교까지 내려오자, 그 당시 스님들이 살지 않고 있던 동화사 대웅전 뒷뜰 흙
속에 묻어둔 사실을 말하면서 남한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찾아서 좋
은 일에 사용하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1. 그러면서 금을 묻어둔 위치와 묻혀있는 량, 그리고 묻혀있는 모습을 말해주
었고(별첨 2011. 12. 28. 작성된 공정인증서 참조 : 1차 탐지 하루전에 작
성), 신청인은 남한으로 온 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어느정도 안정이 된 후인 2010. 봄경 대구 동화사를 찾아가 그 간의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동화사측에서는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1. 그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 물건을 찾기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563호인 대구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묻혀 있으므
로 우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귀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만 굴착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화사와 협의한 끝에 먼저 귀청의 허가를 받으면 동화사측도 굴착에 동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 그리고, 신청인은 동화사의 협조를 받아 2011. 12. 29. 15:00경 금속탐지전문가가 위 물건이 묻혀있는 위치와 물건의 내역을 분명하게 탐지하였고, 굴착의 범위는 바닥에 깔린돌(가로 30cm, 세로 20cm, 높이 6cm정도) 7개정도를 들어내고, 표토석이 무너지지 않게 토류판을 박으면서 깊이 120cm정도를 파면 되었고, 굴착과 복구에 걸리는 시간은 두시간 정도, 굴착과 복구의 비용은 5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굴착후 곧바로 복구할 수 있었으므로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2012. 1. 13. 대구 동구청에 앞선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위의 현상변경신청이 귀청에서 기각되었고, 그 기각 사유는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인 대웅전 기단을 굴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신력이 있는 탐사기관에서 금피가 매장되어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고, 발굴 시공과정이 명확히 제시될 경우 재심의토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 신청인은 그 후 최선을 다해 공신력있는 탐사기관과 문화재 보수 자격이 있는 업체를 물색한 끝에 탐사전문업체가 같은 달 30.경 G.P.R(Ground Penetration Rader) 탐사기로 다시 동화사 대웅전의 뒤뜰을 탐사하였고, 그 탐사보고에 대해 토질 및 기초기술사이자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학과 교수인 김교원에게 분석 의뢰한 결과, 신청인이 밝힌 지점 및 1차 탐사결과 나타난 매장지점과 일치하는 위치의 심도 1.2 ~ 1.3m지점에서 '이상대'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별첨 의견서 참조).

1. 나아가 신청인은 위 의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탐사기기를 찾고 있던 중 PMR(금속방향지시기), D.P.R(Deep Processor Radar. 속칭 Goldenking : 금속탐지기), G.P.A(Ground Penetration Analyzer : 지하관통 분석기) 등 세가지 장비를 가진 업체와 연락이 되어 2. 9. 15:30경 현장에서 보충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 탐사를 하였습니다. PMR은 시료로 장착한 금속과 동일한 금속이 있는 위치를 기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찾는 금속방향지시기인데, 이 사건 금괴가 묻혀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탐지하였고(별첨 사진 1내지 7 각 참조), D.P.R이 수집한 자료에는 지하에 금속이 있다는 영상이 명확하게 나타났으며(별첨 사진 8내지 14 각 참조), G.P.A기기로도 해당 위치의 11.5 깊이에서 금속반응이 영상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사진 15내지 19 각 참조).

1. 위와 같이 신청인이 양아버지로부터 들은 위치와 깊이가 비록 사설탐사 회사

가 탐사한 것이기는 하나 제1차 탐사 결과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제2차로 탐사한 G.P.R 탐사 보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긴급히 보충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3차 PMR, D.P.R, G.P.A 기기에 의한 탐사 결과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1. 또한, 굴착 및 복구공사는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있어서 문화재 전문수리도 하는 종합건설회사에 의뢰하여 기존건물에 충격과 진동을 전혀 주지 않는 방법으로 굴착한 후 복구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동회사와는 귀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후 완성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동회사에 예치하고 난 후 굴착공사를 할 것을 각서하였으며, 동회사도 이에 동의 하였습니다.

1. 아무쪼록 문화재보호법 제 3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 제3호 제다목의 토지굴착행위 및 복구를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GPR탐사 의견서

동화사 GPR탐사에 대한 의견서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에 위치한 동화사 대웅전 부근의 매설물 확인을 위하여 부계기술단(주)이 실시한 GPR(Ground Penetration Radar)탐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1. GPR 탐사는 지하 알은 곳에 매몰된 금속 등 주변지반과 유전율이 상이한 물체를 탐사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비파괴탐사법입니다.
2. 현장탐사는 2012년 1월 30일 13:30-16:00에 실시되었으며 본인과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가 현장탐사 전 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3. 탐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한 “동화사 GPR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뢰인 김상철이 지적한 위치의 심도 1.2-1.3m에서 주변지반과 상이한 유전율을 보이는 “이상대”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4. 의뢰인 에 의하면 이 “이상대”의 위치는 의뢰인이 실시한 금속탐지기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2012년 2월 6일

상기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3> 동의서 (동화사)

동 의 서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주소: 대구시 동구 도학동 35번지)는 김 씨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제1563호 동화사 대웅전)뒤편 뜰을 (800mm×1200mm×1300mm)을 굴착한 후 즉시 복구하는데 대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오며 향후 완공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동화사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이를 실행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 단 첨부도면에 표시된 지점 이외의 장소에 대한 굴착 및 향후 추가굴착은 절대 할 수 없으며, 굴착 후 나온 물건의 소유권 문제는 대한민국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따른다.

2012. 2. 9.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



문화재청 귀하

15.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 시탑전 증축(2차)

가. 제안사항

경남 양산시 소재 국보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에 시탑전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양산시 소재 국보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에 시탑전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동 안건은 ‘11년 7차 문화재위원회(’11.7.21) 심의결과 / 부결
 - 부결 사유 : 건물의 규모, 양식 등이 적절치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부합되도록 조정이 필요함.
- ※ 동 안건은 ‘12년 1차 문화재위원회(’12.1.19) 심의결과 / 보류
 - 보류 사유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통도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 지 정 일 : 1997. 01. 0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8-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0m
 - 사업내용 : 시탑전 증축
 - 철거건물 : 시탑전 1동
 - 위 치 : 지산리 588-1번지

- 철거면적 : 지하 81.71m² / 지상1층 369.80m²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증축건물부분 : 시탑전 2동
- 위 치 : 지산리 588-1번지

구분	현지조사 전 신청사항	현지조사 후 신청사항	비고
건축면적	678.6m ²	699.4m ²	증20.8m ²
연면적	898.25m ² / 가동 498.95m ² , 나동 339.30m ²	861.66m ² / 가동 349.74m ² , 나동 511.92m ²	감36.6m ²
건물구조	한식목구조, 겹처마, 맞배지붕	한식목구조, 겹처마, 맞배지붕 등	
최고높이	가동(8.2m) 나동(8.2m)	가동(8.2m) 나동(8.2m)	
기타		배치 및 평면 변경	

라. 지방자치단체(양산시) 의견

- 의견 없음

마. 현지조사 의견

- 신청부지는 통도사 중심사역을 감싸고 있는 산 능선과 접한 외곽지역으로 능선 끝에는 석탑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신청계획과 같이 규모가 큰 건물이 신축될 경우 산 능선과 탑을 가리게 되어 경관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요사채의 남쪽 부지를 활용하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상부지에서 제외하고, 신청건물은 ‘ㄱ’자형 또는 분동형 등으로 배치를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바. 검토의견

- 본 건은 통도사 중심사역에서 하천 건너 주차장 주변에 시탑전을 증축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신청부지에는 기존 건물과 주차장이 자리잡고 있음
- 당초 신청 배치계획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시 산 능선과 탑을 가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물의 배치를 중심사역에서 더 벗어난 지역으로 옮기고, 평면에 변화를 주어 큰 건물의 부담감을 줄이는 등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요사성격의 건물로서 규모·양식 등이 문화재 주변에 어울릴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의 기술지도 등을 통해 사업추진토록 함이 타당할 것임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요사성격의 건물로서 규모·양식 등이 문화재 주변에 어울릴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의 기술지도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6.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 종무소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양산시 소재 보물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에 종무소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양산시 소재 보물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에 종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동 안전은 ‘12년 1차 문화재위원회(’12.1.19) 심의결과 / 보류
 - 보류 사유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신흥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양산 신흥사 대광전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268번지 신흥사
 - 지정일 : 1992. 01. 1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268번지 신흥사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내
 - 사업내용 : 종무소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37.8m²
 - 건축구조 및 양식 : 한식목구조, 홑처마, 맞배지붕
 - 최고높이 : 5.1m

라. 지방자치단체(양산시) 의견

- 의견 없음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신흥사 경내에 종무소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대웅전 마당의 남쪽이고 사천왕문의 측면에 해당되는 위치임.
- 건물의 규모와 형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부지가 사천왕문의 측면으로 장기적인 사찰 배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바. 현지조사 의견

- 신청부지는 사천왕문의 서측면으로 장기적인 사찰 배치를 고려하여 위치를 동측으로 옮기고 배치와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 부결
 - 사찰 가람배치 상 신청위치에 종무소를 건립하기는 부적절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7.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국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창녕군 소재 국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주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경사지붕 최고높이 10m(2층)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
 - 지 정 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77-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69m
 -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 대지면적 : 742㎡
 - 건축면적 : 328.42㎡
 - 연 면 적 : 892.10㎡
 - 건축구조 및 층수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 3층
 - 최고높이 : 전면도로면 9.95m, 지하층(G.L -3.4m)

라. 지방자치단체(창녕군) 의견

-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의 제3구역에 해당하며, 고시된 허용

기준인 10m(2층)이하의 건물 규모를 초과하여 10m(3층)로 계획된 건물이므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함.

- 지상 1층의 주차장을 건축법에서 1층으로 포함하고 있어 3층으로 분류됨.
- 주변에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10m의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창녕 만옥정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00m 이격된 위치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은 도시가 형성되어 4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척경비에서 거리가 멀고, 주변의 기존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18.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주유소 등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에 주유소 등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에 주유소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경사지붕 최고높이 15m(4층)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창녕농업협동조합장
- (2) 대상문화재 :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 소 재 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09-4
 - 지 정 일 : 1970. 06. 2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02-4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92m
 - 사업내용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사무실 신축
 - 대지면적 : 1,642m²
 - 건축면적 : 153.75m²
 - 가동(캐노피) : 72.00m², 나동(사무실) : 81.75m²
 - 연 면 적 : 153.75m²
 - 건축구조 : 가동 - 철골조, 나동 - 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 가동 - 7.6m , 나동 - 5.6m
 - 기타
 - 기존 건축물 전체 철거

- 주차시설, 조경시설, 정화조 설치 등

라. 지방자치단체(창녕군) 의견

-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제4구역에 해당하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사무실)은 개별심의 대상이므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함
- 기존에 농업협동조합의 부속시설물이었으나, 노후화로 인해 기능 상실되어 한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술정리 서 삼층석탑에서 약 192m 이격된 부지에 주유소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에는 주변은 도시화가 조성된 지역이고 석탑에서 거리가 멀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위험물 처리시설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19.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 템플스테이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 동해시 소재 보물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에 템플스테이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 동해시 소재 보물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에 템플스테이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동 지역은 명승 제37호 「동해 무릉계곡」 내에 위치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2
 - 지정일 : 1998. 04. 0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명승 제37호 「동해 무릉계곡」 내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신축
 - <템플스테이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60.38㎡(262.44㎡)
 - 건축구조 : 지상 1층(한식목구조, 맞배지붕), 지하 1층(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 6.325m / 지하층 3.92m
 - <석축 설치>
 - 1단 자연석 석축 설치(L=26m, H=1.5m), 2단 자연석 석축 설치(L=23m, H=1.3m)

라. 지방자치단체(동해시) 의견

- 전통사찰 삼화사의 템플스테이 체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관광체육부의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문화로서 기본환경인 샤워장, 화장실, 체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마. 검토의견

- 삼화사 삼층석탑에서 좌측으로 약 90m 이격된 부지에 템플스테이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경내보다 높고 주변에는 무설전이 근래에 신축되어 있는 상황임.
- 삼화사는 1977년 사찰 전체를 현 위치로 이건한 사찰이이기는 하나, 신청부지가 경내와 가깝고 높으며, 건물의 규모가 커서 신청건물이 신축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신청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20.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전통불교문화예술관 신축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남 하동군 소재 국보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에 전통불교 문화예술관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하동군 소재 국보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에 전통불교 문화 예술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구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동 안건은 ‘11년 10차 문화재위원회(’11.10.20)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쌍계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 소 재 지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7번지
 - 지 정 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102-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지리산 쌍계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50m경계
 - 사업내용 : 쌍계사 전통 불교문화예술관 신축

구분		당초허가내용	변경신청내용	비고
대지면적		1,049,136.00㎡	1,049,136.00㎡	
건축면적		813.65㎡	854.75㎡	
연면적	지하1층	1,045.57㎡	1,045.57㎡	
	지상1층	656.29㎡	656.29㎡	
	지상2층	529.14㎡	538.88㎡	

	합계	2,231.00m ²	2,240.74m ²	
건폐율		18.55%	19.89%	
용역율		27.02%	27.94%	
구조 및 규모		지상2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전통한식지붕	지상2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전통한식지붕	
기 타			진입도로 신설 W=5.0~8.0m, L=69.0m	
			교량신설 W=12.0m, L=40.0m	
건물위치			당초 위치에서 일부 변경	

라. 검토의견

- 본 건은 하동 쌍계사 사역에서 남쪽 하천 건너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불교문화예술관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기 허가된 사안으로 금번에는 신축 위치와 형태 및 면적을 변경하면서 진입도로와 다리를 개설하고자 재신청한 사항임.
- 신청건물의 형태와 면적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신청부지의 변경은 측량 결과 계곡이 위치하고 있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부지 변경에 따라 신청건물의 위치가 높아지고 중심사역에 가까워지고 있어 경관저해의 우려가 있으며, 교량과 도로개설 또한 많은 지형변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21.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지하수개발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에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에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28번지
 - 지정일 : 1969. 06.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56-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470m
 - 사업내용 : 농업용수 개발
 - 굴착내용 : 굴착깊이 120m, 굴착지름 150mm, 수중모타 3HP
 - 상부보호공간 : 넓이1m², 높이1m

라. 지방자치단체(칠곡군) 의견

-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에서 남서쪽으로 약 470m 이격된 부지에 농

업용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석탑에서 보이지 않으며 거리가 멀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22.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기 마련되어 운영중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강진군수
- (2) 대상문화재
 - 국보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 보물 :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1174번지
- (3) 신청내용(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안>)
 - 기 시행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2010.08.30)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신청 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당초와 같음,		

라. 변경 사유

- 무위사 동측의 능선너머는 무위사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완화 조정 필요.

마. 현지조사의견

- 무위사 전면 지역은 현행과 같이 2구역(1층)으로 하고, 동측 능선너머 지역은 3구역(2층 이하)으로 조정토록 함. 다만, 도로를 경계로 월출산 자락은 당초와 같이 1구역으로 함.

바. 검토의견

- 무위사 주변은 사찰 전면부에 농촌마을이 자리잡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야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상황임.
- 사찰의 전면부와 배면의 산은 기 고시된 기준에 따르되 동쪽 산너머 지역은 산에 가려보이지 않으므로 2층까지 신축을 허용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무위사 진입부는 당초와 같이 2구역 1층으로 하고, 성전면 월하리 599번지 포함 3필지도 2구역 1층으로 조정함.
- 성전면 월하리 599번지 기준으로 하부는 3구역 2층으로 조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23.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등 6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보물 제5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기 마련되어 운영 중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12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소위원회('12.1.31) 검토 결과,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토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주시장

(2) 대상문화재

- ▶ 보물(3건) : 제5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제1402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제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 ▶ 사적(2건) :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제491호 영주 금성대군 신단
- ▶ 문화재자료(1건) : 제347호 순흥향교

○ 소 재 지 :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 외

(3) 신청내용(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등 6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안>)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1. 01. 05)-유형문화재과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이하	○ 최고높이 12m(2층)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08. 02. 18)-보존정책과

구 분	허용 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죽계천)	○ 원지형 보존		
2구역	○ 신축불가 ○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공통사항	○ 권고사항 - 건물신축시 기와지붕 또는 초가지붕 - 가설시설물,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 문화재 경관보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제한 ○ 연면적 1,000㎡이상 건물신축 제한 ○ 순흥 읍내리 고분군 일대의 유물산포지 지역은 시·발굴조사 선행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신청 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영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

○ 변경사유

- 2008년 2월 18일 고시된 보존정책과 허용기준과 2011년 01월 05일 고시된 유형문화재과 허용기준이 상이하여 통합된 기준안 마련이 필요.
- 소수서원의 문화재구역 조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검토지역의 변경과 문화재 구역 주변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인접 지역의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

라. 지방자치단체(영주시) 의견

- 소수서원 주차장까지 1구역으로 하여 보존하고 남측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함.
- 소수서원 동남측의 죽계천 건너편의 산지에 대해서 유형문화재과에서 고시한 1구역(원지형보존)보다는 보존정책과의 고시한 1구역(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마. 검토의견

- 사적 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5건의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대해 보존정책과와 유형문화재과의 기준이 상이하여 통합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소수서원 동남측에 위치한 죽계천과 산지 등 인접지역에 대하여 영주시에 서는 1층으로 규제하기를 신청하였으나 죽계천을 비롯한 소수서원 남쪽지역은 산지 및 농지로 원지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유형문화재과에서 고시된 기준(1구역 보존구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소수서원의 서쪽 절대농지와 소수서원 북서쪽에 위치하는 순흥향교 주변 또한 원지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역사경관 확보를 위해 1구역(보존구역)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미 주거지가 형성된 소수서원 북쪽과 영주선비촌은 기존고시대로 1층 규모를 유지하되 영주선비문화수련원은 소수서원에 비해 해발고도가 높아 충분한 이격거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조망권에 드는 지역이므로 관련법

적용보다는 2층으로 규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24.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보물 제1727호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11.12.2)에 따라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1727호 경주향교 대성전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 (3) 신청내용(경주향교 대성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1-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7구역	○ 별도심의 구역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라. 지방자치단체(경주시) 의견

- 보물 제1727호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은 경주 월성 등 다수의 사적과 경주 교동 최씨고택과 같은 중요문화재가 산재한 지역임
- 현재 지정된 문화재 주변은 대부분 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되어있으며 일부 교촌마을에 대해서만 전통한옥으로 제한하여 사실상 전면적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존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중요민속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 고시대로 시행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임

마. 검토의견

- 경주향교 지역은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일원 등의 사적 영향검토 구역과 중첩되고 있어 보존정책과 고시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보고사항】

안전번호 건축 2012-02-025

25. 경주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 이수 및 귀부 정비공사 추진보고

가. 보고사항

2009~201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주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 이수 및 귀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보수정비 추진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나. 보고사유

- 경주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의 귀부 및 비신 복원을 위한 보수정비 추진 내용을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경주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 이수 및 귀부정비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암곡동 산 1-9번지

(2) 정비내용

- 사업기간 : '10. 07. 28. ~ '12. 02. 03.(공사중지중)
- 사업내용
 - 2008년도에 발견한 귀부머리를 원위치에 접합
 - 비신복원(너비 950mm×두께240mm×높이1,774mm)
 - 비좌의 균열 부분 접합처리
 - 보존처리(건식,습식세척작업)

(3) 주요 추진경과

- '08. 11.20 : 인근 계곡에서 귀부 발견
- '09. 9. 25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09. 11.27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10. 3. 5 : 설계 승인 신청
- '10. 3. 11 : 설계심사회의 개최(조건부 승인)
- '10. 6. 12 : 설계 승인

- '10. 8. 12 : 공사착수보고
- '10.12. 20 : 1차 기술지도자문회의 실시
- '11.12. 21 : 2차 기술지도자문회의 실시
- '12. 2. 1 : 3차 기술지도자문회의 실시

라. 향후 추진계획

- 경주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 이수 및 귀부 공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마. 관계전문가 자문내용

- '09. 9. 25 / '09. 11. 27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시행
- 자문의견

- 복원하는 비는 현재 귀부와 이수가 남아있는 부근에 세우도록 함.
- 복원비를 세울 장소는 사전에 발굴조사를 철저히 시행토록 함.
- 추사 김정희의 방각 역시 2백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서예문화사를 연구하는데 가치가 있으므로 함께 새기도록 함.
- 비의 전액은 현재 관독이 가능한 '아미타불' 녀자만 새기도록 함.
- 비복원 사업은 글씨를 새기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니 많은 시간을 할애 하여 제작토록 함.

- '10. 3. 11 : 설계심사회의 개최(조건부 승인)

- 심사결과 : 조건부 승인

- 관련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술지도단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토록 함.
- 2008년에 발견된 귀부의 머리는 보존처리 후 원위치에 접합토록 함.
- 연구용역 결과 및 성분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석재로 비신을 복원토록 함.
- 기초부는 복원 비의 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산을 실시토록 함.

- '10. 12. 20 : 1차 기술지도자문회의 실시

- 자문의견

- 복원비신의 재질은 보령 웅천에서 채석되는 애석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복원 비신의 크기 및 각자는 원안과 같이 시행토록 함.
- 유구에 영향을 주는 수목은 제거토록 하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최소화 하도록 함.
- 비좌의 균열 이탈된 부분은 수지접착 처리토록 함.

○ ‘11. 12. 21 : 2차 기술지도자회의의 실시

- 자문의견

- 이수는 훼손된 부분을 복원할 경우 이질감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의 모습으로 보존토록 함.
- 귀부와 이수는 원안과 같이 세척 및 보존과학적 처리토록 함.

○ ‘12. 2. 1 : 3차 기술지도자회의의 실시

- 자문의견

- 발견된 귀부의 두부는 귀부 몸체와 암종이 동일하며, 암석의 상태도 매우 양호하므로 세척한 후 접합토록 함.
- 귀두의 색상은 색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이질감을 줄이도록 함.
- 파손되어 이격되어 있는 지대석 부위는 접합 처리토록 함.
- 귀부의 두부를 접착할 때 접착물질 외에 스텐인레스 봉(직경3mm)을 접착면 중앙에 상하 1cm 깊이로 박아 보완토록 함.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

2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등 4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소계		4 건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보물 제49호)	전남 나주시 (○○○)	○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 허가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 변경내용 건축면적 : 264.4㎡(증 2.1㎡) 최고높이 : 5.60m(증 1m) ※ 2011년 제9차 회의 허가	변경 허가 (변경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하도록 함.)	‘12.02.13
인제 한계사지 남·북 삼층석탑 (보물 제1275호, 보물 제1276호)	강원 인제 (○○○)	○ 사업내용 - 건축물 보수공사(지하 1층, 지상2층 276.50㎡) 및 부대공사(정화조) ○ 변경허가 사항(허가기간 연장) - 당초 : 2011.1.25~2012.1.24 - 변경 : 2011.1.25~2013.1.24	허 가 (허가기간 연장)	‘12.2.10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제219호)	충남 논산 (○○○)	○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 허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변경내용 건축면적 : 150.4㎡(증 69.46㎡) 연 면 적 : 152.66㎡(증 71.72㎡) 지상1층 6.4m→지상2층 9.9m ※ 2011년 제3차 회의 허가	변경 허가 (변경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하도록 함.)	‘12.2.6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보물 제498호)	경북 울진 (○○○)	○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 허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변경내용 건축면적 : 97.13㎡(증 0.03㎡) 연 면 적 : 78.5㎡(증 0.05㎡) ※ 2011년 제10차 회의 허가	변경 허가 (변경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하도록 함.)	‘12.2.6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